

이 사 회 의 사 록

2018년 03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새별요양원**

2018년 임 시 이 사 회 의 사 록

1. 개최일시 : 2018년 03월 27일 11:00

2. 개최장소 :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265-30 본 법인의 회의실

3. 총이사수 : 7명

이 사 장 : 박 지숙

이 사 : 경 현옥, 박 호순, 김 지미, 김 수연

외부이사 : 홍 혜순, 오 복경

4. 출석이사수: 6명

이 사 장 : 박 지숙

이 사 : 박 호순, 김 지미, 김 수연

외부이사 : 홍 혜순, 오 복경

5. 회의안건:

1) 정관변경승인건

6. 개회

대표이사 박 지숙은 전체이사 7인중 참석이사6인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며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새로 이사로 선임된 참석이사들의 소개와 안부인사후 회의안건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함을 구하다.

7. 전차회의록처리

박지숙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2018년 02월 06일)을 낭독하며 보고함.

- 오복경이사: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함.

- 박호순이사: 재청함.

동의와 재청이 있자 박지숙대표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부를 물으니 모든 임원이 “예”로 답하다. 이에 박지숙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8. 부의안 심의

제 1 호 의안 정관변경 승인(안)

대표이사 박 지숙 : 본 법인의 정관과 관련하여 1973년 법인 설립후 2003년 취암동에서 현재의 부지로 이전을 하며 신축토지와 신축건물의 법원등기는 정상 등재하였으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미표기로 인해 가액의 등재가 미완료되었고 또한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 법인의 정관도 법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을 정관변경 비교대조표에 의거 설명하다.

(첨부분서: 쌤블원 정관 일부 변경 사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이 사 김 지미 : 그간 누락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짐.

이 사 김 수연 : 법인의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함.

이 사 홍 혜순 : 재청함.

이 사 박 호순 ; 동의함.

이 사 오 복경 : 동의함. (참석이사 전원 동의하다.)

대표이사 박 지숙 : 이사님들 전원의 동의로 제1호 의안인 정관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대표이사 박 지숙 :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회의안건 상정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발표하며 폐회를 선언하다. (11:40)

위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8년 03월 27일

참석자: 대표이사 박 지 숙



이 사 박 호 순



이 사 김 지 미



이 사 김 수 연 (인)

외부이사 홍 혜 순 (인)

외부이사 오 복 경 (인)

배 석 : 사무국장 김 경 옥

-정관 변경 사유-

1. 사회복지법인 썬별원의 정관 별표1 재산목록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건물은 신축당시의 건축비로 등재를 하고자함)
2.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법인 정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법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으로 변경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썬별원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03월 28일

충청남도지사 귀하

썬뿔원 정관 일부 변경 신구조문 대비

현 행	변 경 (안)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년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변경)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년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u>3월 31일까지</u>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0조(임원의 해임)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u>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u>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u>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u> <신설>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7조(이사회 소집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u>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u> <문구수정> ③(현행과 같음)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u>과반수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u>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제34조(직원)

- ①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현행과 같음)

제34조(상근임직원) <문구수정 및 신규>

- ①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 ②상근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현행과 같음)
- ④(신규)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사회복지법인 뽕뽕원 재산목록

2013년 현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적 (㎡)	비 고
토지	논산시 광 석면 산동 리	382-6	답	7,933	
		346-7	대	662	
	은진면 탑 정 로 265-30	346-3	대	3,880	
		346-4	대	3,521	
		346-9	대	900	
		346-10	대	922	
소 계				17,818	
건물	은진면 탑 정 로 265-30		4층	463.11	
			3층	1059.93	
			2층	837.08	
			1층	1784.49	
			지하1층	875.8	
소 계				5,020	

사회복지법인 뽕뽕원 기본재산목록

2018년 1월 현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적(㎡) (공시지가)	평가액
토지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382-6	답	7,933 (15,500)	122,961,500
	은진면 교촌리	346-7	대	662 (52,700)	34,887,400
		346-3	대	3,880 (54,800)	212,624,000
		346-4	대	3,521 (54,800)	192,950,800
		346-9	대	900 (52,700)	47,430,000
		346-10	대	922 (52,700)	48,589,400
	소 계			17,818	₩659,443,100
건물	은진면 교촌리 346-3, 346-4, 346-7, 346-9, 346-10 (탑정로 265-30)	4층	463.11	115,314,390	
		3층	1059.93	263,922,570	
		2층	837.08	208,432,920	
		1층	1784.49	444,338,010	
		지하1층	875.8	218,074,200	
		부속건물 (세탁물 건조실)	41.76	8,101,440	
		소 계			5,062.17
합 계				₩1,917,626,630	